

의안번호	2205115
의 퇴 인	송언석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1.
추 계 번호	24F475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전통시장 등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확대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6조제6항 (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)	○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시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추가 공제한도를 확대하고, 추가 공제한도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 비용을 추가 -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 확대 ※ 공제한도: (현행) 10% → (개정안) 20% - 기업업무추진비의 추가공제한도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 지출분 외에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 비용을 추가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6조제6항 (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추가적인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하고, 추가적인 한도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할 경우,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36조제6항)
 -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「법인세법」 제25조에 따른 한도액(이하 ‘일반한도’) 내에서 손금산입을 허용
 - 단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중 문화비 지출분과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한도액(이하 ‘추가한도’)을 허용

※ 추가한도: (문화비 지출분) 일반한도의 20%

(전통시장 지출분) 일반한도의 10%

-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추가한도를 일반한도의 20%로 확대하고, 추가한도 적용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
 - 전통시장 지출분 추가한도: (현행) 일반한도의 10% → (개정안) 20%
 - 추가한도 적용대상: (현행) 전통시장 지출분 → (개정안) 전통시장 지출분 및 온누리상품권 지출분
 - 적용기한: 2025.12.31.

[표 1] 기업업무추진비 한도: 현행 및 개정안

		현행	개정안
일반 (①+②)	①기본한도	1,200만원 (단, 중소기업은 3,600만원)	
	②수입금액별 한도	100억원 이하: 수입금액 × 0.3% 100~500억원: (수입금액-100억원) × 0.2% 500억원 초과: (수입금액-500억원) × 0.03%	
추가	문화비 지출분	문화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반한도의 20% 추가 ※ 일반한도 = 기본한도 + 수입금액별 한도 - 적용기한: 2025.12.31.	
	전통시장 지출분 등	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반한도의 10% 추가 ※ 단,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출액은 제외 - 적용기한: 2025.12.31.	전통시장 지출분 및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반한도의 20% 추가 (이하 좌동)

주: 일반한도는 「법인세법」 제25조, 추가한도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36조에 규정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내국법인이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하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할 기업업무추진비 규모를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연도별 기업업무추진비 신고 규모는 있으나, 법인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 여부 및 규모에 대한 자료나 기업업무추진비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규모 등에 대하여 구분된 자료 등 세수효과 추계에 필요한 기초자료가

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참고로, 최근 5년(2019~2023년)간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지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

※ 2023년 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‘접대비’ 명칭이 ‘기업업무추진비’로 변경

[표 2] 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지출액 추이

(단위: 조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중소기업	7.6	8.2	8.2	9.1	11.1
일반법인	3.5	3.6	3.2	3.6	4.2
계	11.2	11.7	11.4	12.7	15.3

주: 2023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‘기업업무추진비’의 명칭이 ‘접대비’였음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포털(TASIS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